

2021년도 제28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0. 19.(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홍지만(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76)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80건(안전번호 제2021-143064호~제2021-14373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143064호~143067호는 웹하드에 만화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43068호~143073호는 □□□ 및 웹하드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43074호~143075호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저작물의 악보를 제공한 사안으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복제·전송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가 직접 사법적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94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8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7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홍지만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C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3064호~14306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43068호~143073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및 웹하드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3068호~14307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43074호~14307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 및 게임 공식 홈페이지에 대중음악의 악보가 게시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 심의한 사례가 있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동일한 안전은 없었으며, 유사한 안전으로는 게임 삽입곡을 직접 채보해 미디(전자음)로 연주한 후 게시한 사안이 있었음. 해당 안전은 가창곡인 원곡에서 가창 부분 등을 제외한 채 단순 전자음으로, 전곡 분량의 3분의 1 가량을 연주한 후 연주영상을 복제·전송한 사안이었음. 해당 안전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음.
- C 위원: 원저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 코드로 변환했다면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 E 위원: 그러함. 가사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작곡자에게는 허락을 받아야 함.
- C 위원: 해당 이용이 비영리라면 형사적으로 친고죄이나, 해당 게임에 영리성이 있다면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임.
- E 위원: 악보를 만들어 배포하려면 작곡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함.
- 오진해 전문위원: 악보 작성 및 복제·전송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말씀이 저작물이용의 원칙에 부합함. 그러나 심의 안건과 같이 좁은 목적에 한정된 이용이 해당 음악의 합법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시정권고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이와 달리 만일 저작권자가 직접 사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재의 여지도 있음.
- E 위원: 원곡과 심의대상 게시물은 3화음으로 되어 있는데, 원곡의 시장가치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 오진해 전문위원: 전자음으로 연주되는 3화음의 경우 가창이 포함되거나, 5화음 이상으로 구성된 원곡에 비하여는 단순하다고 볼 수 있음.
- E 위원: 가수 입장에서는 노래 자체가 많이 유통되어야지, 악보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적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판매용 악보 자체의 불법복제, 또는 그에 근접하게 채보된 실연용 악보인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의결해왔음. 예를 들어 실연물을 직접 채보한 악보를 유료 판매하는 게시물들도 있었음. 다만 본 사안 게시물은 이용목적과 품질 면에서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일반적으로, 악보를 통해 실연을 하고,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지급된다면 결과적으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악보의 유통을 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 오진해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1-143075호에 게시된 악보의 저작자는 본인이 실연만을 공표했을 뿐 악보를 공표하지 않았는데, 무단 채보된 악보가 유통되어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는 사실을 지적하였던 바가 있음.
- E 위원: 게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악보는 게임 사업자가 직접 게시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게시판은 유저 게시판으로, 게임 사업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함. 그런데 전체 분량의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 오진해 전문위원: 공정이용의 고려요소 중 이용된 분량이 있기는 하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

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1-143074호~143075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부결 의견임.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 B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3074호~143075호는 원안대로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43076호~14371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중점](게임)크라이시스 3 Crysis (2013)'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제2021-143088호 '[중점](게임)크라이시스 3 Crysis (2013)'는 2013. 2. 19. 발매한 PC 게임으로 웹하드에서 1,540포인트에 배포중임.
(영화 '[중점](영화)졸트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43665호 '[중점](영화)졸트 (2021)'는 2021. 10. 14.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186포인트에 판매중임.

(영화 '[중점](영화)더 길티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 번호 제2021-143686호 '[중점](영화)더 길티 (2021)'은 2021. 10. 1.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80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949건에 대해 시정 권고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43076호~14373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아, C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43076호~14371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3714호~14373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

의를 요청한 사안임. 보호원이 현재 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영화 '◁◁◁◁' 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모바일 웹하드 및 밴드에 해당 영화가 게시되어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최신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B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3714호~14373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43064호~143067호, 제2021-143068호~143073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43074호~143075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43076호~14373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이 제28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8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0. 26.

분과위원장 홍지만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